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5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이상욱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 석,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종복, 이봉준,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채수지,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현재 재난안전 관련 산업은 소규모 · 영세기업 위주로 되어있어 자생적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신기술 개발 촉진 · 보급 등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국회에서는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 시행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안전산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 나.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재난안전산업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재난안전산업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
- 마. 재난안전산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
5.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6. 재난안전 대응 공간·제품·시각·미디어·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평가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나.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장

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

나.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중 재난안전사업과 연관이 있는 임직원

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표창)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실태조사), 제8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제18조(표창)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7조(실태조사)	×	실태조사 관련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중복 사용을 지양하고자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자료 중 서울시 재난안전산업 자료 ¹⁾ 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비용 추계에서 제외함
2	제8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명확하고 세부적인 분류/범위 및 현황 파악 등의 어려움이 있고,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필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투입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제9조(위원회 설치)	○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
4	제18조(표창)	△	재난안전사업과 관련한 포상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편성하는 포상 관련 예산으로 충당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9조(위원회 설치)

나. 전제

- 비용은 2026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6~203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제8조의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 위원 중 3명을 공무원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28,500천원(연평균 5,700천원)

1) 행정안전부, 「2023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승인통계,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07495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9조(위원회 설치)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소계(a)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위원회 설치)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28,500천원(연평균 5,7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9조(위원회 설치)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소계(a)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 = 28,500천원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24,000천원+4,500천원

- 참석수당 = 24,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200천원×12명×2회×5년

※ 지급인원 : 위원 15명 중 공무원(당연직) 3명은 제외

※ 참석수당 단가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업무추진경비 = 4,5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15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